

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1995. 3. 27.

교육사회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 출 일 자 : 1995년 3월 21일

○ 회 부 일 자 : 1995년 3월 21일

다. 상 정 일 자 : 제 1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○ 제 2차 교육사회위원회(1995. 3. 27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관리국장 신 재 철)

가. 제 인 이 유

청주시 구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설치와 도·농 복합형태 시지역의 읍설치로 인하여 충청북도립학교 위치가 변경되어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코자 함.

나. 주 요 골 자

○ 청주시의 구설치로 위치변경 학교

학교급별	국	중	고		특수학교	계
			고	통신고		
상 당 구	15(1)	8	5	1	1	30(1)
홍 덕 구	19	6	6	1		32
계	34(1)	14	11	2	1	62(1)

※ ()은 분교장으로 본수에 미포함.

○ 도·농 복합형태 시지역의 읍설치로 위치변경 학교

지 역 별	국	중	고	계
충주시 주덕읍	2	1	1	4
제천시 봉양읍	3(1)	1	1	5(1)
계	5(1)	2	2	9(1)

※ ()은 분교장으로 본수에 미포함

-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 [별표1] 중 충청북도중앙도서관의 위치중 "청주시"를 "청주시 홍덕구"로 변경하고, 증원도서관의 위치중 "주덕면"을 "주덕읍"으로 변경함.
- 충청북도수영장설치·운영에관한조례중 제2조(위치)중 "청주시"를 "청주시 홍덕구"로 변경함.
-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제2조(위치)중 "청주시"를 "청주시 상당구"로 변경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약

(전문위원 김 영 만)

- 청주시 구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설치와 도·농 복합형태 시지역인 충주시 및 세천시의 읍설치로 인하여 이 지역의 독립학교의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

또한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시용에관한조례등 3건의 다른 조례내용중 위치가 변경되는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시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: " 없 음 "

5. 토론 요약 : " 없 음 "

6. 심사 결과 : 원안기결

7. 소수의견요지 : " 없 음 "

8. 조 례 안 : 별 첨

9. 신구조문대비표: 별 첨